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21
----------	-------

발의연월일 : 2018. 4. 24.

발의자 : 김삼화 · 이찬열 · 오세정

이동섭 · 이학재 · 신용현

채이배 · 하태경 · 김중로

김수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u>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u>당연직</u> <u>위원이 아닌 위원</u> ----- -----. ② (현행과 같음)